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자치행정과)

의안번호	제139호
제 출 자	정윤주 의원 외 7명 (2023. 5 19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정진만

## 1. 제안이유

- 주민참여예산의 편성부터 사업 시행 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까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,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 확대를 제안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임기 확대(안 제10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사전협의 : 자치행정과

라. 입법예고 : 2023. 5. 19. ~ 2023. 5. 24.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제1항,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, 불필요한 후단 ‘임기 종료 후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’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제5항1)에 ‘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’라고 규정되어 있어,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위원회 임기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.
- 서울 25개 구청 중 서대문구(1년, 두 차례까지 연임 가능), 성북

- 1)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(이하 “주민참여예산기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1.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2.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
  3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·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구, 용산구(1년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) 등 3개 구만이 임기가 1년이며 나머지 22개 구청은 2년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(중구는 2년, 계속 연임 가능)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」 제12조2)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, 주민 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의 기능을 수행함.  
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 되어진 사업은 해당 년도가 아닌 다음 해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이 시행되져 1년의 임기로는 예산 편성 이후 사업의 시행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까지의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.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
- 2) 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1.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
  2.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
  3.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
  4.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